

2018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헌법(오전반) 2순환

강의계획서

일정 2018.01.08(월) ~ 01.15.(월) / 총 8회 {01.13(토) 오전, 오후 연강}

강의시간

월~토 오전 09:00 ~ 13:00
토 오후 09:00 ~ 18:00

강사

문태환

학습목표

교재 : 2018 객관식 헌법 / 문태환 편저

1.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였다고 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식문제를 통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례나 조문의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 지문화되는지를 확인하고, 반복 연습하여야 합니다.
2. 헌법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습 복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업시간만으로 압축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출제가능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4. 최근에 개정된 법률조항이나, 새로이 발행된 판례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 오시면, 헌법과목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 진도표

회차	쟁점
1회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보호의무,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2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3회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정치적 자유권, 참정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4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정부형태, 정당제도, 선거제도
5회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국회의 구성과 조직,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국회의 권한,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6회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특권,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신분관계,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자문기관, 감사원
7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헌법재판제도, 일반심판절차,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8회	권한쟁의심판, 헌법의 개념, 헌법의 특성,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변천, 헌법의 수호, 헌법사, 헌법의 적용범위, 헌법의 전문, 국민주권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헌법객관식 공부의 방향

1. 출제위원의 고민과 출제유형.

국가고시 출제위원을 보조한 경험과 문제출제를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출제위원의 가장 큰 고민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난이도 조정입니다.

개개의 지문이 변별력을 갖게끔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고단한 작업입니다. 모든 문제를 누구나 풀 수 있어서는 안되며,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여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출제위원이 지문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상 ① 지문을 길게 구성하는 방식과 ② 지문자체를 특이하게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OX조합형, ㄱㄴ선택형). 내용상으로는 ①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과(부속법령) ② 이해가 필요한 내용을 묻는 방식이 있습니다(이론).

수험생으로서는 미리 대비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두 번째는 문제의 오류가능성입니다.

시험 직후 시작되는 오답시비는 출제위원을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초보 출제위원들은 문제의 내용에 신경을 쓰는 반면, 출제위원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오류가능성을 없애는 쪽에 비중을 둡니다.

그러므로 출제위원의 선호도에 따라 지문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1순위는 **현재판례**이며, 2순위는 **법조문**이고, 3순위는 **헌정사**입니다. 명확한 사실이므로 오답시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공부방법론

헌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것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객관식에 있어서는 “깊이 있고 많은 양의 지식”보다는 “얕고 선명한 지식”이 실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1) 현재판례 공부방법론

우선순위에 따라 본다면,

① 최소한 반드시 암기해야 할 것은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건(이하 위헌사건)의 “사실관계와 결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생소한 판례는 모두 합헌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판례문제의 50%는 결론을 묻는 유형이므로 암기를 최소화하면서 절반 이상의 정답률을 확정하고 시작합니다.

- ② 그 다음에는 위헌사건의 “이유 중 중요판단부분”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로 헌재가 행한 개별 쟁점(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판단,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에 있어서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위헌심사의 척도, 과잉금지원칙을 통한 평가 등)에 대한 판시에 주목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판례결론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낼 수 있기도 합니다. 헌재가 이미 위헌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기본권 주체성, 보호영역, 적법요건 등을 통과했으며, 과잉금지원칙 중 어느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③ 마지막으로 “합헌사건”의 “개별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시내용을 암기합니다. 어찌 보면 판례문제의 승패는 여기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암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헌법조문 공부방법

기본적으로 헌법전문과 헌법조문은 모두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국가고시에서 틀리게 출제되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외웁니다.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미 해석론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혼동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 헌정사 공부방법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헌정사는 암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쟁점만(1공화국~3공화국)을 명확하게 암기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중요쟁점을 반대해석하거나 유추해내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4) 부속법령 공부방법

출제위원의 입장에서 부속법령이란 난이도 조절과 오답시비를 피해가기 위한 가장 좋은 소스입니다. 실제 사법시험에서도 틀리는 부분은 대부분 이 곳입니다.

불안한 나머지 부속법령집을 따로 보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전혀 불필요합니다. 기본서에서 쟁점이 되는 것만을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본서 내용이란 것이 부속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기술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